

KLSI

ISSUE PAPER

제 145 호
2021-04호
(2020.03.17.)

www.klsi.org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 6개 직종 사례 연구 -

이종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명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황수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 I. 머리말
-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및 근로실태
- IV. 6개 직종 안전보건 설문조사 결과
- V. 6개 직종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
- VI. 제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사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호대상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본 연구는 다원화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산출해 본 바, 임금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28천명임.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는 4,12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138천명인데 이 세 유형을 모두 합하면 5,793천명임. 이 규모는 ‘진성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규모이고 종사상지위로 간단히 추정한 결과로 과다 추산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통해 재확인되는 점은,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퍼져 있는 ‘혼종형 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파악·추정할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임. 본 연구의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기존 문헌과 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469,930명 규모임.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안전사고 위험요인: 건설기계 운전원-넘어짐·미끄러짐 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비래사고,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퀵서비스기사-넘어짐·미끄러짐 사고, 학습지교사-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 (2) 건강장해 유해요인: 건설기계 운전원-소음 및 분진, 골프장 경기보조원-혹서기 및 혹한기 작업,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감염성바이러스, 퀵서비스기사-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학습지교사-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
 - (3) 심리적 유해요인: 건설기계 운전원-고용불안, 골프장 경기보조원-감정노동,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불공정 계약관계(갑질), 학습지교사-감정노동.
-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학습지교사-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부상), 질병(위장병, 방광염), 우울증(영업스트레스, 고객응대, 직장갑질).
- (2) 골프장 경기보조원-장시간 야외노출, 부상, 타구사고, 열악한 휴게시설, 낙뢰, 유독물질(농약/약품) 노출, 흑서기·흑한기 경기진행, 감정노동, 성희롱.
- (3) 대리운전기사-교통사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도보이동과 불편한 자세, 직장내 괴롭힘, 감정노동.
- (4) 건설기계 운전원-협착·절단, 충돌, 추락, 전복, 교통사고, 분진 등 보건위생.
- (5) 퀵서비스기사-교통사고,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흑서기·흑한기 작업, 심리적 요인(손님 독촉 전화).
- (6) 택배기사-안전사고(손끼임,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흑서기·흑한기 작업, 감정노동, 교통사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추진전략은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비전을 ‘차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정하고, 그 하위에 3대 정책 목표로 “산재예방사업 거버넌스 구축”,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 “안전보건 시설 및 설비의 지원”을 설정함. “산재예방사업 거버넌스 구축”이란 직종별로 산재예방을 위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할 수 있는 기구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자체나 공단이 노사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란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안전보건 시설 및 설비의 지원”이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촉진하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한 직종별 세부 과제로는 공공화장실 확보(학습지), 블랙박스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기사, 건설기계), 위생시설 설치(택배기사), 감정노동 캠페인 지원(골프장캐디), 안전운행 보호(퀵서비스), 특수건강진단 지원(대리기사) 등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¹⁾

- 6개 직종 사례 연구 -

이종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명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황수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I. 머리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있거나 특정 회사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계약 당사자인 노무수령자(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함. 즉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정홍준, 201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는 2004년 약 71만명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5년 이후로 약 50만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박호환 외(2011)의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37개 직종 129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고, 조돈문 외(2015)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230만명 수준으로 추정함. 가장 최근의 정홍준 외(2017) 연구에서는 166만명으로 추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시행)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개정 전 ‘근로자’에 한정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됨. 이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함.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1)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2020년 연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연구]를 수정·요약한 것입니다.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점검원, 컨테이너·시멘트·철강·위험물질 운송기사 등을 적용범위에 추가함.(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자 (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고, 그 직종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현재 보호대상 직종은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전속성은 약하지만, 사업주 특정이 가능한 직종을 계속 추가할 필요가 있음. 보호대상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한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다원화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6개 직종(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에 대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노동자성 판단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와 달리 외형상 특정 사업주와 도급 또는 이와 비슷한 특수 형태의 계약을 맺고 실적과 성과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른 경제수단이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성이 강함. 즉,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무이용자와 계약체결 시 대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독립자영업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함.²⁾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함.³⁾

-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 사용자가 근무 장소·시간을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2) 김인재(20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학』 제31권, 한국노동법학회, 2009, S. 239.

3) 임종률(2019), 『노동법』 제17판, S. 38.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에 따른 수익·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노동자 지위의 인정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0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령임.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일정한 요건만 정하고 시행령으로 직종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지입차주 겸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전속 킥서비스 배송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로 한정되어 있음.
- 산재보험법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과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적인 강제가입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⁴⁾.

3.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 당시 제조업 중심의 규율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가 크게 변화하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상태였음. 따라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4)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 (1) 법률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 (2) 가입선택의 여부를 노동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어 사회보험의 강제적 성격과 맞지 않음. 실제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보험료 반액의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기도 함.

〈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까지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를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함.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함.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자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및 근로실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추계의 한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일의 특성과 빈번하게 변하는 업무계약 관계, 이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배타적 판단 기준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직종, 종사상지위 등을 활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추산해왔음.
- 통계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이하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있음.
 - 부가조사에서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임. 따라서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된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제외됨. 특히 최근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유사한 혼종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추계에서 상당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직종과 관계없이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성이 강한 종사자’가 있음. 이들은 통계청의 공식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개연성이 높음.

〈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규모 (단위: 천명)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559	528	6,799	1,535	4,127	1,1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8)

-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산출해 본 바, 임금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28천명임.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는 4,12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138천명인데 이 세 유형을 모두 합하면 5,793천명임.
- 약 580만명은 ‘진성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규모이며, 종사상지위로만 간단하게 추정된 것이므로 과다 추산된 결과임.
- 이를 통해 재확인되는 점은,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퍼져 있는 ‘혼종형 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파악·추정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종을 중심으로 하되 비임금근로자를 포괄하고자 함.
- 통계청과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정보는 소분류(3자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14개 직업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개 직업의 근무여건을 정확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해당 직업들이 속한 상위 직업분류(소분류) 기준으로 근무여건을 살펴봄. 〈표 3〉은 산재보험 대상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개 직업을 표준직업 분류에 맞춰 배치한 것임.

〈표 3〉 산재보험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개 직업의 표준직업분류 분포

구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표준직업분류(소)	표준직업분류(세/세세)
교육	학습지교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	학습지 방문강사(25451)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	교육 연수 기관 강사(25491)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286)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28691)
	방과후 교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	그 외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99)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875)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원(87507)
	구난차기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246)	119 구조대원(24611)/ 구급요원(24612)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자동차 운전원(873)	그 외 자동차 운전원(87399)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92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09)
여가	연극배우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283)	배우(28321)

구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표준직업분류(소)	표준직업분류(세/세세)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281)	방송 및 시나리오 작가(28111)	
		시각 및 공연 예술가(284)	사진작가(28421)	
	애니메이터	시각 및 공연 예술가(284)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2843)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여가 서비스 종사자(432)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4321)	
판매	방문판매원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532)	방문 판매원(53210)	
	영업사원	영업 종사자(510)	자동차 영업원(5101)/ 제품 및 광고 영업원(510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5103)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영업 종사자(510)	대출모집인(51041)/신용카드모집인(51042)	
	보험설계사	영업 종사자(510)	보험설계사(51032)	
	텔레마케터	통신 관련 판매직(531)	텔레마케터(53130)	
서비스	골프장캐디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432)	골프장캐디(43292)	
	A/S기사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75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76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771)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772)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7531)/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7532)/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7533)/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7534)/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7535)/ 건설·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7536)/ 농업용·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7539)/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7611)/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7612)/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7619)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7711)/ 이동전화기 수리원(7712)/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7719)/ 방송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7721)/ 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7722)/ 통신·방송 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7723)	
	정수기 방문점검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999)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99992)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992)	계기검침원(99211), 가스점검원(99212)	
	간병인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421)	간병인(42112)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자동차 운전원(873)	대리운전원(87393)	
		배달원(922)	그 외 택배원(92229)	
	가사·육아도우미	가사·육아도우미(951)	가사도우미(95110)/ 육아도우미(95120)	
	생활정보신문배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953)	전단지배포원 및 벽보원(95392)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매장 판매 종사자(521)	의류 판매원(52121)	
	심부름기사	배달원(922)	기타 배달원(92229)	
	기타	목욕관리사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422)	목욕관리사(42234)
		북큐레이터	학예사·사서·기록물 관리사(282)	학예사(28211)
통·번역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281)	번역가(28141)/ 통역가(28142)	
애견미용사		기타 돌봄·보건·개인생활서비스종사자(429)	반려동물미용사(42911)	
웨딩플래너		혼례 및 장례 종사자(423)	웨딩플래너(42312)	
음악가		시각 및 공연 예술가(284)	국악 및 전통 예능인(2844)/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2845)/ 가수 및 성악가(2846)	

○ <표 4>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 3>의 직종소분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산재보험 대상 및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34개 직종)의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임. 취업자 수가 약 800만명 정도인데,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매장판매종사자(24%)임. 이어 자동차 운전원(12.3%), 영업종사자(8.5%),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8.2%),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5.9%) 순임.

<표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직종의 취업자 규모(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직종 소분류	빈도(명)	비율(%)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0,578	3.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663,233	8.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03,314	1.3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31,082	0.4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88,220	1.1
시각 및 공연 예술가	81,062	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40,508	1.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74,496	5.9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353,277	4.4
혼례 및 장례 종사자	18,180	0.2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77,842	1.0
여가 서비스 종사자	242,966	3.0
영업 종사자	690,908	8.5
매장 판매 종사자	1,941,037	24.0
통신 관련 판매직	215,501	2.7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155,584	1.9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9,985	2.6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01,569	1.3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36,970	0.5
방송 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8,359	1.0
자동차 운전원	995,091	12.3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7,401	1.8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105,950	1.3
배달원	343,399	4.2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15,069	1.4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172,849	2.1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67,669	0.8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198,172	2.4
합계	8,090,269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2019, 원자료.

○ 동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인 6개 직종이 속해 있는 직업의 종사상지위, 성별 취업자, 고용계약기간, 근속, 평균임금, 일을 한 시간 등을 살펴봄. 6개 직종이 포함된 직

업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학습지교사),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레미콘트럭기사), 영업 종사자(보험설계사), 여가 서비스 종사자(골프장캐디), 자동차 운전원, 배달원(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임.

-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는 약 66만명으로 이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1.7%임. 여성이 74%로 여성 편중 직종에 해당하며 평균연령은 40세임. 이 직종의 근속은 평균 4.9년이며, 총 일한시간은 평균 30시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1만원임.
-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은 약 14만 7천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6.5%에 해당함. 남성이 100%인 남성 전형 직종이며, 평균연령은 49.8세임. 이 직종의 근속은 평균 10.9년이며, 총 일한시간은 평균 44.3시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90만원임.
- 영업 종사자는 약 69만명으로 이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이며, 남성이 66.8%임. 평균연령은 44.9세임. 이 직종의 근속은 평균 7.6년이며, 총 일한시간은 평균 41.9시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98만원임.
- 여가 서비스 종사자는 약 24만 3천명으로 이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1.4%임. 남성이 53%로 성비 격차가 거의 없음. 평균연령은 43.8세임. 이 직종의 근속은 평균 4.7년이며, 총 일한시간은 평균 43.2시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74만원임.
- 자동차 운전원은 약 99만 5천명으로 이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0.2%이며, 남성이 98.3%로 남성 전형적 직종임. 평균연령은 53.4세임. 이 직종의 근속은 평균 9년이며, 총 일한시간은 평균 46.7시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42만원임.
- 배달원은 약 34만 3천명으로 이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6.7%임. 남성이 90.1%로 남성 전형적 직종임. 평균연령은 44.9세임. 이 직종의 근속은 평균 5.4년이며, 총 일한시간은 평균 46.1시간,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7만원임.

○ <표 5>는 본 연구에서 조사하려는 6개 직종의 가장 최근 추정된 규모, 근거, 비고 등을 정리한 것임.

<표 5> 조사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현황

직종	규모(명)	근거	비고
골프장캐디	3,800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산업 2020'	전속성 높음
학습지교사	81,7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등록된 61,400명이지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음	개인사업자 지위 전속성 높음
퀵서비스기사	17,477	운수업조사보고서(2018)의 늘찬배달업 종사자 기준	개인사업자 지위
택배기사	48,000	신태중(2019), 박종식(2019)〈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내부통계자료 참조 규모추계	-근로자 -개인사업자 지위(택배회사+화물운송업체)
대리기사	163,500	박성희 외(2020),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보고서 참조	노조법상 노동자
건설기계	155,453	김용하·강동욱·석재은(2016),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참조	레미콘기사는 2008년부터 높은 전속성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됨

IV. 6개 직종 안전보건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표 6〉 설문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명		평균/빈도 (사례수)		변수명		평균/빈도 (사례수)	
연령(세)		51세	(253)	동종업무 경력기간 (년)		13.9년	(195)
	30세 미만	2.4	(6)		3년 미만	10.3	(20)
세대별 (범주)	30-40세 미만	7.9	(20)	동종업무 경력기간 (범주)	3-6년 미만	12.3	(24)
	40-50세 미만	31.2	(79)		6-9년 미만	9.2	(18)
	50-60세 미만	38.7	(98)		9-12년 미만	18.5	(36)
	60세 이상	19.8	(50)		12-15년 미만	2.6	(5)
					15년 이상	47.2	(92)
성별	남성	57.0	(146)	현 사업장 경력기간 (년)		9.1	(199)
	여성	43.0	(110)	직종	3년 미만	22.6	(45)
직종	건설기계	17.2	(46)		3-6년 미만	21.1	(42)
	골프장 경기보조원	18.4	(49)		6-9년 미만	16.6	(33)
	대리운전	13.9	(37)		9-12년 미만	14.6	(29)
	택배기사	8.2	(22)		12-15년 미만	6.5	(13)
	퀵서비스기사	17.6	(47)		15년 이상	18.6	(37)
	학습지교사	24.7	(66)				

- 설문조사에는 6개 직종(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267명이 응답을 하였음.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51세로,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2.4%, 30세 이상~40세미만이 7.9%, 40~50세 미만이 31.2%, 50~60세 미만이 38.7%, 60세 미만이 19.8%로 절반 이상이 40대와 50대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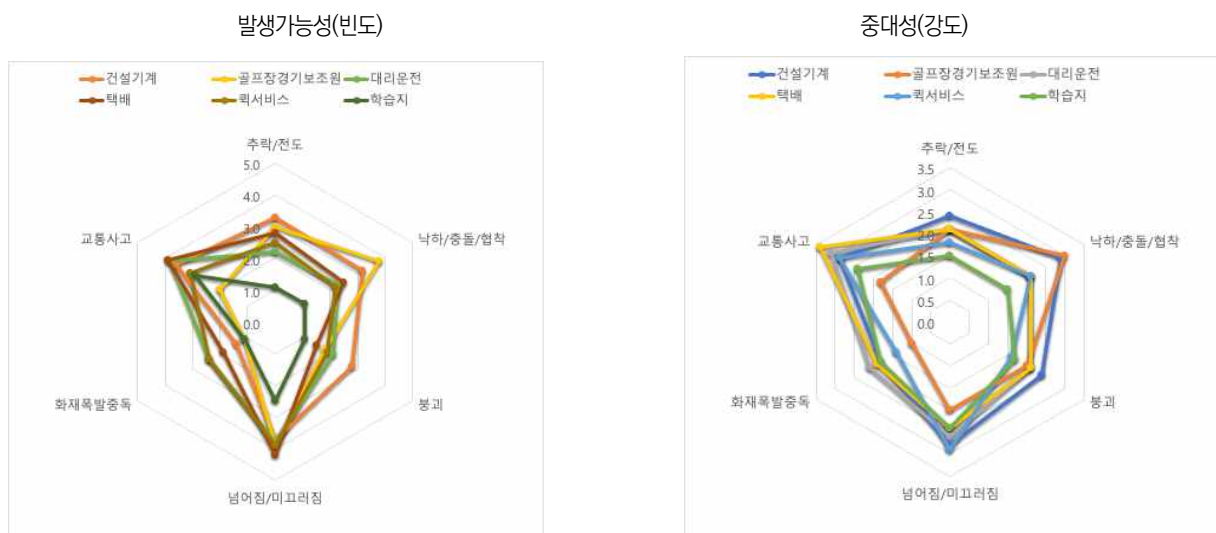
2. 위험요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위험요인을 △안전사고 위험요인(6개), △작업 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 유해요인(9개), △심리적 유해요인(7개)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그리고 각각의 위험요인을 다시 △발생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이때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점 척도로, 중대성은 비치료부터 사망까지 4점 척도로 질문하고, 각 응답의 척도 점수를 곱하여 위험성 평가를 하였음.

가. 안전사고 위험요인

- 발생가능성: 건설기계 직종에서는 업무수행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사고(이하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3.7점,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이하 교통사고) 3.6점 순으로 높게 나왔음.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3.9점, 낙하·비래 및 충돌·협착사고(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건에 부딪히거나 장비 및 기계에 끼임) 3.8점으로 높았음. 대리운전기사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와 교통사고가 나란히 3.8점으로 가장 높았음. 택배기사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4.2점, 교통사고 3.9점이었음. 퀵서비스기사는 교통사고 3.1점,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2.4점, 학습지교사는 교통사고 2.9점,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2.5점이었음. 6개 직종 모두 넘어짐·미끄러짐 사고를 공통의 높은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음.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제외한 5개 직종에서는 교통사고도 공통적 안전사고 위험요인이었음.
- 중대성: 건설기계,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처럼 이동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교통사고와 넘어짐·미끄러짐 사고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반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낙하·비래 및 충돌·협착사고 점수가 3.0점으로 가장 높은데 잦은 골프공 타구사고 경험에서 비롯되는 응답으로 해석됨.

〈그림 1〉 직종별 안전사고 위험요인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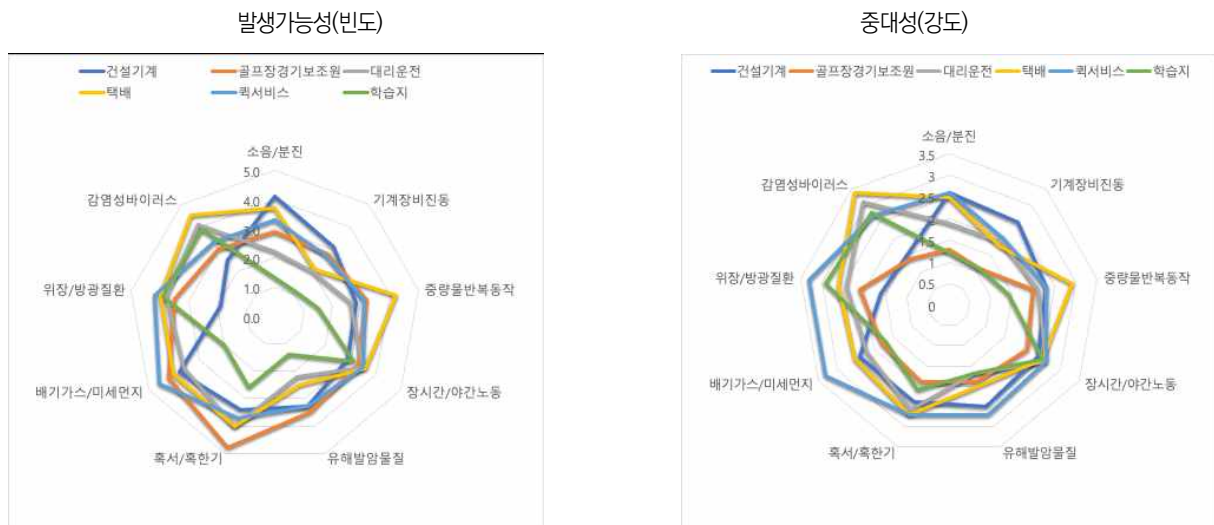
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 유해요인

- 발생가능성: 흡서기 및 흡한기 작업(열사병, 감기 및 동상질환), 옥외활동 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위장, 방광질환) 등이 6개 직종 모두에서 평

균적으로 높은 발생가능성을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염성 바이러스도 위험한 건강장해 유해요인으로 지적되었음(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직종별 특이점은 건설기계 직종에서는 소음 및 분진(난청·호흡기 질환)이 4.1점으로 다른 요인보다 가장 높은 점수였고, 택배기사는 중량물취급 및 반복동작, 불안정한 작업자세(근골격계 질병)가 4.2점으로 다른 직종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는 점임.

- 중대성: 발생가능성이 높은 유해요인이 중대성 또한 대체로 높게 나타났음. 직종별 가장 높은 유해요인은, 건설기계 직종-소음 및 분진(난청·호흡기 질환), 골프장 경기보조원-장시간 근무·교대근무·야간근무(우울증, 뇌심혈관 질환), 대리운전기사-감염성바이러스, 택배기사-감염성바이러스, 퀵서비스기사-옥외활동 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와 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위장, 방광질환), 학습지교사-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위장, 방광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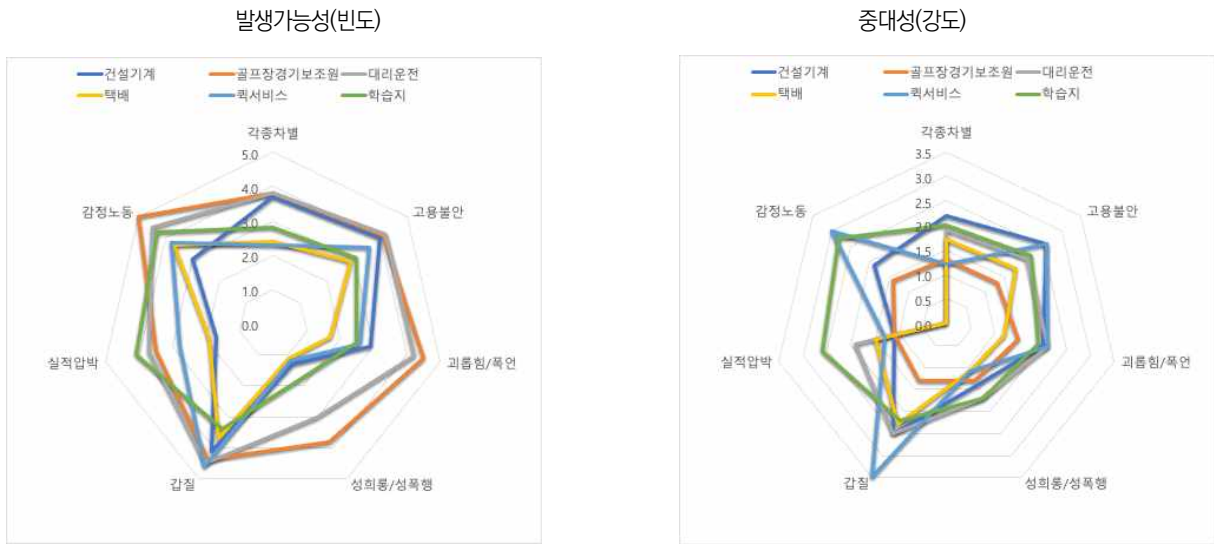
〈그림 2〉 직종별 건강장해 유해요인 점수



다. 심리적 유해요인

- 발생가능성: 불공정 계약관계(갑질)와 감정노동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건설기계-불공정 계약관계(갑질), 골프장 경기보조원-감정노동,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불공정 계약관계(갑질)와 감정노동, 퀵서비스기사-불공정 계약관계(갑질), 학습지교사-감정노동임.
- 중대성: 건설기계-고용불안, 골프장 경기보조원-업무관련자에 의한 괴롭힘·폭언·폭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불공정 계약관계(갑질), 학습지교사-감정노동으로 나타남. 특이점은 대리운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공통으로 불공정 계약관계(갑질)로 인한 심리적 유해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점임.

〈그림 3〉 직종별 심리적 유해 요인 점수



3. 현행 안전보건대책에 대한 평가

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정도

- 신체적 과로를 줄이기 위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대해서, 대리기사만이 보통에 근접하는 2.9점을 준 반면 나머지 5개 직종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6개 직종 모두 대체로 '낮음'으로 평가함.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전달 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6개 직종의 사업주 의무 이행 정도에서의 차이라면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직종 사업주에 대한 평가가 나머지 3개 직종보다 근소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표 7〉 사업주의 의무 이행 정도

구분	평균	건설 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과로)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1.9	2.0	2.1	2.9	1.7	1.7	1.7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1.8	2.0	1.7	1.9	1.8	1.6	1.6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1.9	2.4	2.3	1.7	1.9	1.6	1.7
평 균	1.9	2.2	2.0	2.2	1.8	1.6	1.7

나. 사업주의 예방조치⁵⁾

- 안전사고 예방조치: 건설기계 직종에서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와 교통사고를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는 각각 1.7점과 2.5점이었음.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낙하·비래 및 충돌·협착사고에 대한 만족도가 1.9점으로 미흡했고,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점수도 1.3점으로 미흡함.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넘어짐·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1.5점이었고, 학습지교사의 위험성 요인인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만족도는 1.7점이었음.

〈표 8〉 사업주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만족도

구분	평균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추락 및 전도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가 넘어짐)	1.8	2.0	1.8	1.6	1.3	1.7	1.7
낙하, 비래 및 충돌, 협착사고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건에 부딪히거나 장비 및 기계에 끼임)	1.9	1.8	1.9	1.5	1.5	1.7	1.8
지반 및 시설물 붕괴사고 (지반 및 시설물의 꺼짐 및 붕괴)	1.9	2.3	1.7	1.6	1.5	1.8	1.9
업무수행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사고	1.6	1.7	1.7	1.5	1.2	1.5	1.5
감전, 화재, 폭발 사고 및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중독사고	1.5	2.3	1.5	1.9	1.5	1.6	1.8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1.6	2.5	1.6	1.8	1.3	1.5	1.7
평균	1.7	2.0	1.8	1.7	1.3	1.5	1.6

〈표 9〉 사업주의 건강장애 예방조치 만족도

구분	평균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소음 및 분진 (난청/호흡기질환)	1.5	1.4	1.5	1.8	1.5	1.1	1.9
기계 및 장비의 진동	1.7	1.8	1.5	1.8	1.6	1.2	2.1
중량물취급 및 반복동작,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근골격계질환)	1.5	1.9	1.4	1.9	1.4	1.1	1.7
장시간근무,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우울증, 뇌심혈관질환 등)	1.5	1.9	1.5	1.5	1.6	1.2	1.4
유해 발암물질 노출 (피부질환, 직업성 암 등)	1.6	1.8	1.4	1.7	1.8	1.3	1.8
흡서기 및 흡한기 작업(열사병, 감기 및 동상질환)	1.4	1.5	1.2	1.6	1.4	1.2	1.6
옥외 활동 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등(호흡기/폐질환)	1.4	1.6	1.2	1.6	1.5	1.1	1.6
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 등(위장, 방광질환 등)	1.5	2.1	1.7	1.5	1.4	1.1	1.5
감염성 바이러스 (코로나 등)	1.6	1.7	1.6	1.8	1.5	1.2	1.7
평균	1.5	1.7	1.4	1.7	1.6	1.2	1.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3개 위험성 평가 항목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 만족도를 질문함. 3개 위험성 평가항목을 4점 척도(매우미흡-미흡-충분-매우충분)로 구성하여 질문한 결과, 3개 위험성의 평균값이 모두 2점(미흡) 미만으로 나타났음.

-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전체 평균 점수가 1.5점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보다 더 낮았음. 건설기계에서 가장 위험요인인 소음 및 분진(난청·호흡기 질환) 1.4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흡서기 및 흡한기 작업 예방조치는 1.2점,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의 위험요인인 감염성 바이러스 예방조치가 각각 1.8점과 1.5점, 퀵서비스기사의 옥외활동 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예방조치 1.1점, 학습지교사의 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위장, 방광질환) 예방조치는 1.5점임. 직종별로 건강장해 위험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던 항목에 대한 예방 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심리적 유해요인 예방조치:** 전체 평균 점수가 1.6점으로 충분하지 못함. 직종별 주요 심리적 유해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만족도 점수를 보면, 건설기계-고용불안 1.5점, 골프장 경기보조원-감정노동 1.4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불공정 계약관계(갑질) 1.6점·1.7점·1.2점, 학습지교사-감정노동 1.5점임.

〈표 10〉 사업주의 심리적 유해요인 예방조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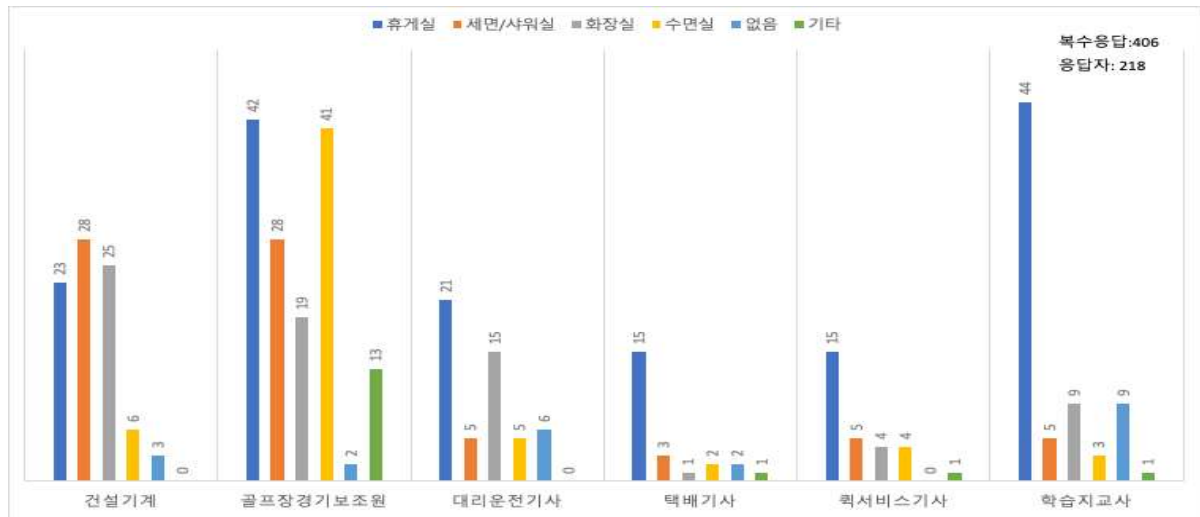
구분	평균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사업장내 각종 차별	1.7	1.6	2.0	1.7	2.1	1.3	1.6
고용불안	1.6	1.5	2.2	1.5	1.9	1.2	1.5
업무관련자에 의한 괴롭힘, 폭언 및 폭행	1.8	2.0	1.8	1.5	2.4	1.2	1.9
업무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행 등	1.9	1.8	1.9	1.7	2.6	1.5	2.1
불공정 계약관계(갑질)	1.4	1.3	1.4	1.6	1.7	1.2	1.5
과도한 영업 및 실적압박	1.7	2.0	1.6	1.7	2.3	1.5	1.4
감정노동	1.4	1.4	1.2	1.7	1.5	1.2	1.5
평균	1.6	1.6	1.8	1.7	1.9	1.3	1.6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중임. 해당 직종은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원, 대리운전자임.
- 해당 직종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건설기계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제외하고, 대리운전기사(93.6%)와 퀵서비스기사(86.1%)는 대체로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택배기사의 경우 42.9%가 1~2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전속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기계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함.

〈표 11〉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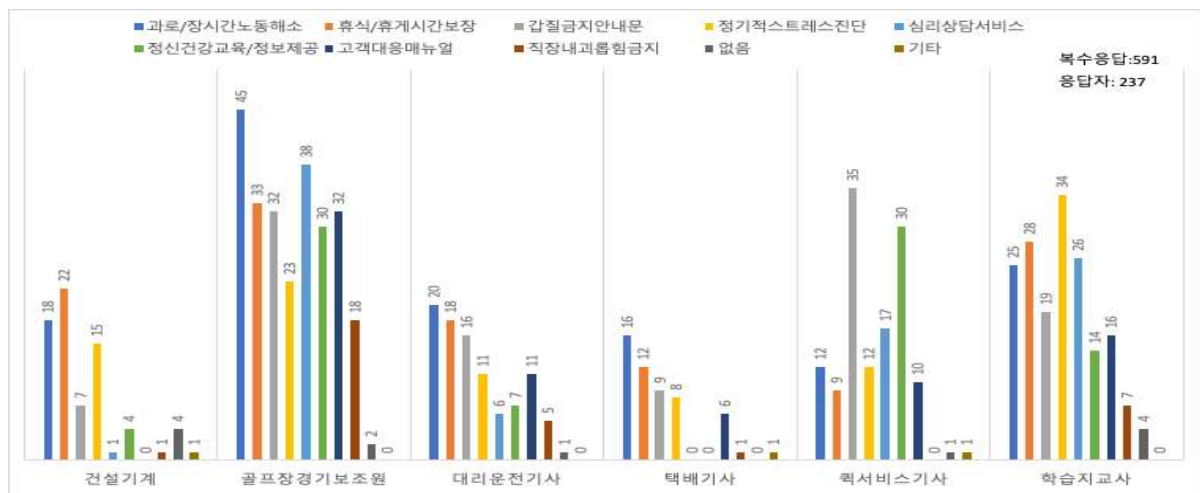
구분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계
교육받지 않음	빈도(명)	11	13	29	12	37	51	153
	비중(%)	(24.4)	(27.1)	(93.6)	(57.1)	(86.1)	(81.0)	(61.0)
1~2시간 교육	빈도(명)	34	35	2	9	6	12	98
	비중(%)	(75.6)	(72.9)	(6.5)	(42.9)	(14.0)	(19.1)	(39.0)
계	빈도(명)	45	48	31	21	43	63	25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4〉 필요한 보건위생시설



○ 필요한 보건위생시설: 건설기계 직종을 제외한 5개 직종에서 휴게실이 가장 필요한 보건위생 시설로 나타났음. 건설기계 직종은 세면실·샤워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밖에는 건설기계-화장실, 골프장 경기보조원-수면실, 대리운전기사-화장실 등을 필요한 시설로 응답하였음.

〈그림 5〉 필요한 정신건강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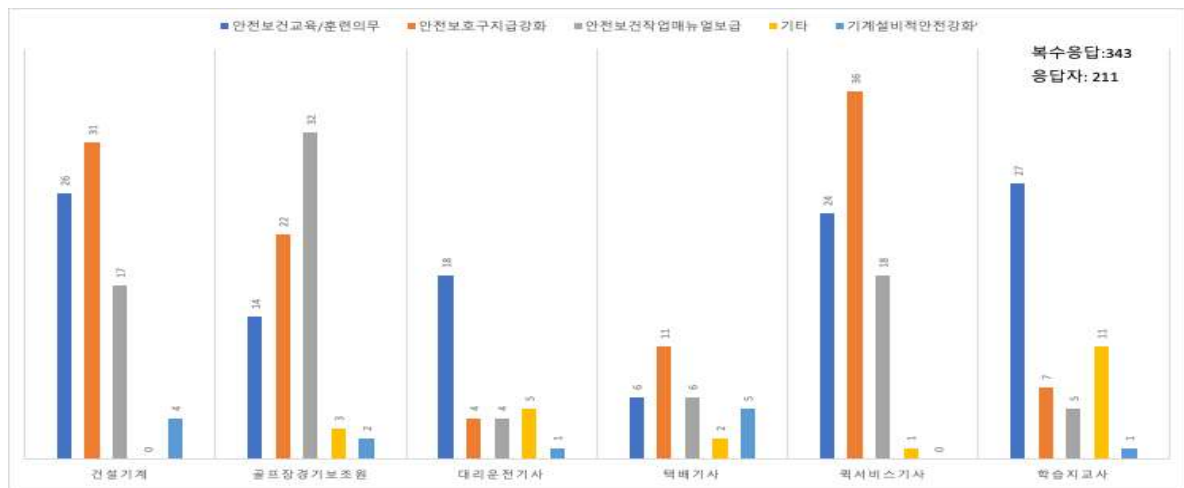


- 필요한 정신건강 대책: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는 과로·장시간 노동 해소를 가장 필요한 정신건강 대책으로 응답한 반면 건설기계는 충분한 휴식과 휴게시간 보장, 퀵서비스기사는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과 정보제공, 학습지교사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을 가장 필요한 정신건강 대책으로 응답하였음.

다.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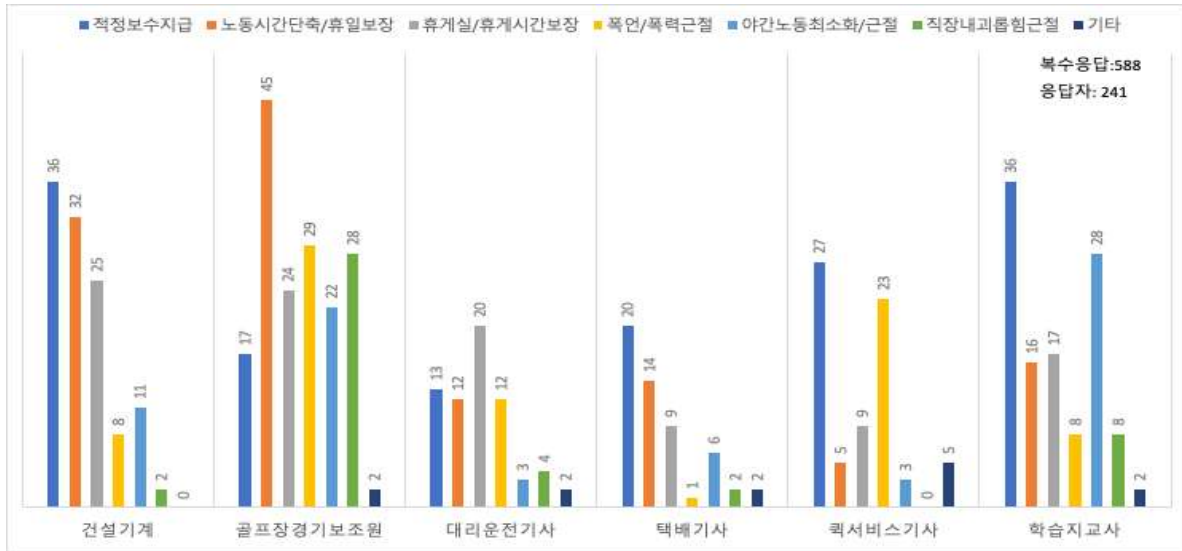
- 작업과정 보호대책: 건설기계에서는 안전보호구 지급 강화와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의무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안전보건작업 매뉴얼 보급과 안전보호구 지급 강화, 대리운전기사는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의무화, 택배기사는 안전보호구 지급 강화, 퀵서비스기사는 안전보호구 지급 강화, 학습지교사는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의무화를 작업과정에서 바람직한 보호 대책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6〉 작업과정 보호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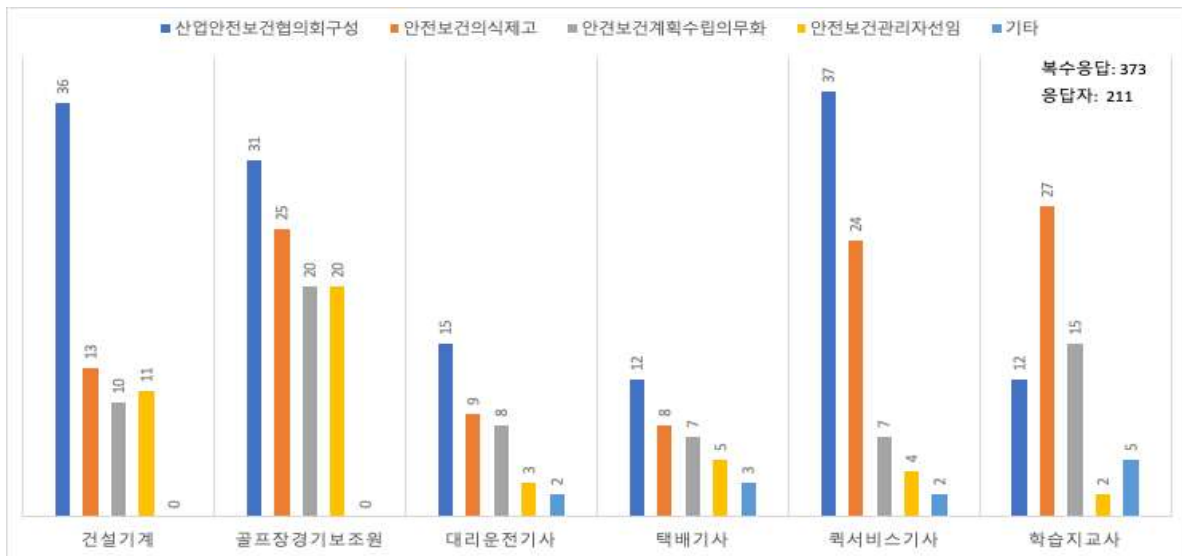
- 작업환경 개선 대책: 건설기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직종은 작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책으로 적정 보수 지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시간단축(휴일보장)을, 대리운전기사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을 중요한 대책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7〉 작업환경 개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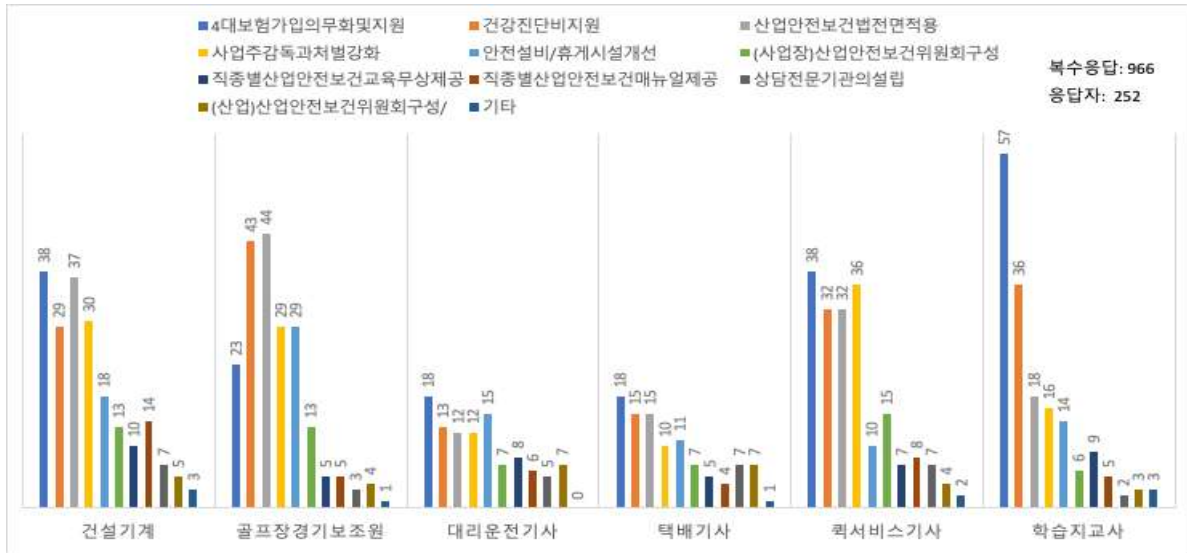


- 바람직한 경영조직 대책: 학습지교사를 제외한 5개 직종에서는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을 가장 바람직한 대책으로 꼽은 반면 학습지교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그림 8〉 경영조직에서 바람직한 대책



〈그림 9〉 정부에 바라는 사항



V. 6개 직종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면접결과)

1. 학습지교사

-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은 부상은 넘어짐, 교통사고, 발목관절 뻐, 관절염, 어깨결림, 부종 등이 있으며 질병으로는 방광염, 위장병과 스트레스성 위염과 우울증 등임.

가. 근골격계 질환

(1) 디스크

- 학습지교사들은 회원들의 교재 및 교구를 들고 다녀야 하며, 회원이 다 뜯 교재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가방을 장시간 들고 이동해야 함.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음.
- 학습지 노동자들은 대부분 수업 장소가 방문 가정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좁은 책상에 아이와 나란히 앉거나 함께 수업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낮은 책상에서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함. 이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고 발이 저리는 경우가 많음.
- 학습지 회사 마다 차이가 나지만 하루 30번의 수업이 있다면 30권의 새로운 교재를 들고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교재를 회수해 오도록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30권 정도의 수업 교재

를 계속 들고 다녀야 함. 수업교재는 30권을 기준으로 약 1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며 이 밖에도 교구나 홍보물, 생일 선물 등도 들고 다녀야 함.

(2) 부상

- 수업이 있는 구역 내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학습지 노동자들은 잦은 부상에 시달림. 특히, 밤 9시나 10시까지 수업할 경우, 어두운 시간에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음. 지점에 따라 선생님들의 복장이나 신발 등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 하이힐을 신거나 치마를 입도록 하여 부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짐.
- 고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정비 또는 고장이 날 때는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함.

나. 질병

(1) 위장병

- 학습지교사의 업무 시간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교한 후부터 시작되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할 수 없음. 이로 인하여 학습지 노동자들 대부분 위장병을 앓고 있음. 그리고 영업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염도 많이 앓고 있음.

(2) 방광염

-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방광염과 신우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학습지교사들의 수업시간은 10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수업시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잠시의 시간을 내기도 어려움.
- 화장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잠겨 있기도 하고 단지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가는 시간 때문에 쉽게 가기 어렵기도 함. 주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근처의 상가화장실을 찾아가야 하는데 대부분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음.

다. 우울증

(1) 영업 스트레스

- 학습지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회원들의 퇴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을 가함. 특히 월말에 퇴회자들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더욱 심해짐.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짜로 회원을 등록시키고 학습지 노동자가 그 대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2) 고객응대

- 아이들과 학부모를 함께 상대하는 학습지 노동자들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는 고객임.
- 아이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부모로부터 이유 없는 항의를 받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됨.

(3) 직장 갑질

- 학습지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해고의 경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교실을 회수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음.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항의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음.

2.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 장시간 야외 노출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야외에서 네 시간 이상을 걷고 뛰어 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음.

나. 스프링클러와 맨홀로 인한 부상

- 봄부터 여름까지는 잔디가 자라면 스프링클러 식별이 어렵고, 스프링클러와 잔디의 높낮이 차이로 발이 걸리거나 맨홀에 발이 빠져 발목인대 부상이 잦음.

다. 타구사고

- 골프의 특성상 타구사고가 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함.

라. 열악한 휴게시설

-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한낮에도 어둡고, 창이나 환기구가 없는 지하 공간이라 환기가 되지 않음.

마. 낙뢰

- 여름철에는 집중 호우와 함께 낙뢰 위험이 늘어나고, 산악 지형에 조성된 국내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낙뢰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큼. 골프장의 낙뢰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최근 골프장에서 영업을 위해 비오는 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미끄럼 사고나 낙뢰 사고의 가능성이 더 커짐.

바. 말벌 또는 진드기 벌레물림과 뱀 또는 유기견 출현

- 코스 내 뱀, 말벌 등 출현(가을철), 카티이동시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불을 찾기 위해 풀숲을 헤치고 다니다가 벌에 쏘이는 경우 발생.

사. 유독 물질 노출

- 잔디 관리를 위해 엄청난 농약과 약품을 사용하고 있음. 캐디들이 이 약품에 고스란히 노출되나 어떤 약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함. 면접자가 근무하는 A 골프장은 매립지 위에 설립되어 유독가스가 올라오기도 함.

아. 혹서기/혹한기 경기 진행

- 최소 다섯 시간, 비수기에는 7시간 이상을 필드에서 이동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한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 겨울에는 너무 추운 상황임. 최소한 여름에는 38도 이상,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 일 경우 경기진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함.

자. 과도한 감정노동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무 중 과도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음.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욕설, 모욕 등을 일삼는 고객들이 많음. 그러나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고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한 고객이 클레임을 거는 경우 벌당이나 벌금을 주어 제재를 가하고 있음.

차. 성희롱

- 대부분이 여성들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업무 중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 그러나 고객 4명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1명이 함께 라운딩을 하는 도중에 성

희롱을 하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통해 골프장은 성희롱을 당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롯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됨.

3. 대리운전기사

가. 교통사고

- 대리운전기사의 장시간 및 야간노동, 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 과속, 신호위반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대리운전기사들이 전동킥보드를 이동중에 사용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진 상태임. 특히 서울과 달리 지역은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 중인데, 이로 인한 전복,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다만 야간 전동킥보드 사용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장려하기 보다는 야간시간대 전동킥보드 사용을 금지시키고, 대체 교통수단(합류차 제공 등)을 제공하는 방향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법인 소속의 대리기사는 검은색 양복을 입어야 하는데, 야간시간에 도보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또 불편한 양복과 구두를 신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고 관절과 근육에 악영향이 있음.

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 대리운전기사는 업체 난립과 경쟁으로 인하여 요금이 정체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수준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계비 확보를 위해 주휴일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부분 대리기사가 주 60~70시간을 근무할 것으로 추정됨.
- 대리기사는 주취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야간노동은 일반적으로 생체 일주기 리듬의 파괴, 멜라토닌 분비감소, 수면 부족, 불건강 행동 요인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야간 근무자는 주간근무자 보다 업무상 사고, 심혈관질환, 수면장애, 소화기질환 및 유방암 등의 발생위험이 높게 됨.
- 외부에서 대기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화장실 이용의 곤란 때문에 발생함. 시내라도 대부분의 공공화장실은 폐쇄되고, 공공기관도 출입할 수 없고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도 심야에는 개방하지 않음. 대전 지역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 다르게 '이동노

동자 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이 큼. 대리기사들을 위한 교육·상담 등 거점으로서 역할을 위해 도시마다 쉼터 설치가 필요함.

다. 도보 이동과 불편한 자세

- 대리기사는 하루 평균 6.83km를 도보로 이동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도보이동과 급격한 육체적 움직임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장시간 운전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감정노동)

-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리기사들은 콜 수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하소연이 있음. 실적이 나쁠 경우 전화로 '그만두라'는 식의 협박을 당하거나, 소위 '퐁콜'⁶⁾을 배정 받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함. 인터뷰에서 면접참여자는 이를 직장내 차별행위, 괴롭힘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함.
- 고객과 관계에서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만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함.
 - 대리기사는 취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이 발생 하더라도 정당하게 항의하기 보다 이를 인내하게 됨. 이로 인한 우울, 자살충동,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흡연·음주가 증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심혈관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4. 건설기계운전원

가. 협착·절단 (기계적 동작)

- 덤프트럭: 덤프트럭 하부 및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 붐이 낙하하여 협착이 발생할 수 있음.
- 콘크리트믹서트럭: 하차 작업 시 기계적 동작에 의해 절단, 끼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레미콘 차량의 붐 고정장치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믹서트럭의 회전장치에 손이 끼이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이 가까이 붙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차량사이에 협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함.

6) 변화가에서 가까운 곳(단가가 싼 곳), 원거리(단가가 높은 곳)이지만 외진 곳 등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콜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의미함.

나. 충돌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후진중 후진경보장치 미작동 및 후방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하거나,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핸드폰 사용 등)로 근로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건설현장에 신호수가 없거나, 있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음.

다. 추락

-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송작업 완료후 복귀하여 차량에 붙어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하는데, 이때 차량 믹서드럼 위에서 추락하는 경우 발생함. 특히 동절기에 믹서드럼 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음.

라. 전복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지반이 약한 쪽으로 차량이 전복되거나, 경사지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의 전복,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 및 고임목설치 미비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이 발생할 수 있음.

마. 교통사고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차량의 교통사고는 과로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바. 분진 등 보건·위생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현장의 분진으로 인해 종사자 중에 호흡기 질환자가 많음. 수면부족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함. 덤프트럭은) 건설현장에서 최초 터파기를 할 때 투입되기 때문에, 현장에 화장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게 됨. 화장실과 휴게실이 모두 열악함.

5. 퀵서비스기사

가. 교통사고

- 업무수행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높은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꼽혔음. 낙엽이 떨어져 쌓이면 새벽이나 갓길, 커브길 미끄러짐이 많음. 겨울에 눈이 온 후 염화칼슘이

뿌려진 후에 위험함. 아침, 저녁으로 가장 위험함. 겨울 낮에는 염화칼슘이 녹아서 안전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함. 오토바이는 주로 갓길 운행인데, 차도에는 모래가 없으나 갓길에 모래가 쌓임(청소문제). 그래서 갓길 모래에서도 미끄러짐이 일어남.

- 전화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데, 전화에 신경 쓸 경우 앞 차 정지 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음. 다리 지날 때와 터널 지날 때 가장 위험함. “사무실(업체)에서는 다리,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도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건당 금액이 낮기 때문임. 무리하게 배송 수를 높이려다 보니 사고 발생이 높아짐.

나.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 이륜차를 타고 도시를 장시간 운행하는 퀵서비스기사의 특성 상 자동차 배기가스의 매연, 미세먼지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계절적으로는 더운 여름철, 도로 특성으로는 터널 운행에서 가장 심각함.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목이 따끔거리는 질환을 겪는 기사가 있음. 일반마스크(KF94)는 매연에는 도움이 되지만 땀이 차서 오래 쓰지 못하고 있음. 방진마스크(필터 삽입)를 사용할 수 있으나 헬멧과 동시 착용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 필터 3개 이상 끼우면 헬멧을 쓰기 불편함. 특히, 매연으로 인해 ‘시력’이나 안구 질환을 겪는 경우가 있음. 안전모의 시야보호막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함.

다. 혹서기 혹한기 작업

- 근속년수가 오래된 기사일수록 ‘팔’을 중심으로 피부질환(피부암 포함)이 발생함. 때때로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경미하지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음. 여름철에도 ‘긴 소매’ 옷이 필수이고 두꺼운 청바지를 입어서 보호해야 함. 가벼우면서도 보호대가 장착된 안전복을 구입해야 하지만 가격 부담으로 ‘특별한 안전복’을 구입하지는 않음.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오히려 옷을 입기에는 나은 편임.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바이크복’을 구입하기도 함).

라. 근골격계 질환

- 이륜차를 타고 대도시를 장시간 운행하는 노동특성 상, 허리통증, 목통증 등의 질환을 앓고

7) 가죽으로 된 바이크복은 상의만 60~70만원으로 고가품임. 한때 성수동에서 ‘인조가죽(레자)’을 활용한 바이크복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고 있음. 바이크복은 ‘아대(어깨, 팔 등)’가 장착되어 미끄러짐 사고 등에서 퀵기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함.

있음. 이륜차의 핸들을 고정된 자세로 오래 운행하여 어깨, 허리, 목통증을 호소함.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고 있으므로 목통증에 시달리고, 두통도 동반됨. 특히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손목, 손가락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⁸⁾.

- 배송 화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 함. 퀵서비스 업체에서 정확하게 중량을 얘기하지 않거나, '박스 1상자'라고 에둘러 말하기도 함. 중량이 무거운 경우 퀵서비스 업체에 요청을 해볼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퀵기사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고객도 중량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함⁹⁾.

마. 심리적 요인

- 손님으로부터의 독촉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함. 심할 경우 요청 고객, 출발지 고객, 도착지 고객, 퀵서비스 업체 등 4군데서 전화를 하기도 함. 핸드폰처럼 고가품의 경우 잦은 전화가 있음.
- 현재처럼 낮은 수익구조에서 운행하는 퀵서비스의 특성 상 여러 개의 물품을 동선을 짜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음¹⁰⁾. 지연 도착할 경우 배송비를 다시 흥정하거나 배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함.

6. 택배기사

가. 안전사고

- 분류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로는 지나친 무게가 실린 롤테이너를 이동하다가 넘어질 경우 롤테이너에 끼어서 '발'을 다치는 사고(우체국 택배), 컨베이어벨트 분류작업 시 '손 끼임' 사고(민간 택배), 터미널에 배송물건을 지나치게 높게 쌓아두어 물건 상차 과정에서 쌓아두는 물건의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나. 업무상 질병

- 질병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질병 경험 수준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호소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임. 허리 통증 호소자는 83.6%, 상지 통증 호소자는 87.7%, 하지 통증 호소자는 85.2%에 달하고 두통이나 눈의 피로 등을 호소하는 비율도 75%임.

8) 손가락 휘어짐은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휘어진다고 함.

9) 부피는 작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금형(70kg)을 나르기도 함.

10) 고객이 빠른 배송을 원할 경우 '급송비'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무실에서 예상 거리를 얘기하고, 요금을 변경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음(단, 손님으로부터 과당 요금을 내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 택배기사들의 일상적 작업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부담 작업에 해당함. 분류 작업과 상·하차 작업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유해요인이 다수 발견되었음. 분류 작업과 상·하차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밝힌 11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요인 중 7가지나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분류작업은 과로사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택배노동자들을 골병들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 이밖에 물품 파레트 이송작업, 물품 태그작업, 차량운행, 배달작업 모두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명됨. 가령 롤테이너 이동 시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단독으로 취급할 경우 과도한 힘을 사용하고 있고, 단독으로 다량의 롤테이너 취급시 반복적인 신체 부위를 사용함. 또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경우 신체 부위에 부하가 발생함(어깨, 허리). 택배 탑차의 높이가 낮을 경우 대부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됨. 최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규격이 낮아져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 탑차의 높이를 줄이게 될 경우 계속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어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함.
- 택배연대노조 소속 우정본부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2020년 4~6월까지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를 통해 3,712명의 우체국 택배노동자 중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관리대상자’가 756명, 현재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통증호소자’가 242명으로 전체 인원 중 27%에 해당하는 998명이 근골격계 질환 자각 증상 양성자로 판정되었음¹¹⁾.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거나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임. 면접에 따르면 하루에 분류작업으로 3~4시간 동안 평균 560개를 하고 배송은 평균 313개를 하고 있음. 택배 중량은 다양하지만 20kg 이상의 중량물도 많아 큰 유해요인이 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보통 400여개를 분류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분류작업 개수가 559개로 150여개가 늘고, 배송개수도 250여개에서 310여개로 60여개 이상 늘었다고 함.

다. 혹서기·혹한기 작업

- 아침에 출근하여 분류 및 적재(상차)작업이 이뤄지는 대리점 혹은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음. 혹한기나 혹서기 때 난로나 선풍기 없이 야외에서 장시간 분류작업을 하고, 지붕이 없어서 비나 눈을 맞으며 작업하며, 휴게 공간이 없거나 화장실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음.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우 시 작업 78.7%, 폭설 시 작업 69.0%, 폭염경보 시 작업 79.6%로 혹한기, 혹서기에도 작업은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 우천 시에는 택배기사가 비를 맞더라도

11) 택배연대노조는 실명으로 진행된 증상 설문조사의 결과가 아프면 실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악화가 해고위험으로 작용하는 택배현장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다분히 보수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화물’이 비에 젖으면 안 됨.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음. 특히 ‘터미널’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모든 화물이 비에 젖어 고객으로부터의 불평, 불만을 택배기사가 온전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음.

라. 감정노동

- 택배기사의 58%가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음(택배연대노조, 2016).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이니 만큼,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아파트단지 배송 시 입구 출입을 위한 ‘키’를 관리실로부터 받아서 사용할 경우 입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음. 민간택배 면접자는 우체국택배 택배기사만 ‘입구 키’를 주는 경우도 목격하고, 큰 실망감을 느낌.

마. 교통사고

- 택배기사 중 일반 주택단지나 골목길을 통하여 배송을 하는 경우 주로 ‘대물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 특히 골목가게의 ‘입간판’, ‘천막’ 등을 손상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음. 원인은 택배 화물차량이 높다보니 우천 시나 커브길에서 시야확보가 어려워 입간판, 가게 천막 접촉이 잦음.
-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출퇴근 시 졸음운전도 자주 발생한다고 함. 6개월만에 6번의 사고를 일으킨 ‘신참자’도 있었다고 함.

VI. 제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함.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2017년 8월)를 보면 산업안전보건 체계 혁신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강화를 명시함.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예방 추진전략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하는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환경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고 건강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공통된 사업과제로 ‘직종·지역별 사회적 협의체(산업안

전보건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제안함.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레미콘기사 등 전속성이 높은 직종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이지만, 전속성이 높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경우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및 직종별로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함.

-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인증 사업을 제안함. 전속성 없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서는 거래대상이 기업이거나(건설기계) 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업체를 확인하기 어려워(대리기사, 킷 등) 인증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가 속한 기업들은 일반인을 거래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거래과정에 기업의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인증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직종별 종사자 규모, 사업모델, 계약관계, 작업과정, 이해관계집단 등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이므로, 직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직종별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직종별 재해예방 사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공공화장실 확보(학습지), 블랙박스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킷서비스, 택배기사, 대리기사, 건설기계), 위생시설 설치(택배기사), 감정노동 캠페인 지원(골프장캐디), 안전운행 보호(킷서비스), 특수건강진단 지원(대리기사) 등임.

〈표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제(안)

구분	주요 내용
학습지교사	공공화장실 확보 사업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방 혹은 비밀번호 공유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 위치 정보 수집 공유
골프장캐디	골프장 카트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 골프장 골프 카트에 대한 규정 마련 블랙박스 설치 권고 혹은 설치 비용 지원
	감정노동 캠페인 사업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위해 홍보 게시물 설치
킷서비스기사	킷서비스기사 산업안전 보건교육(시범) 킷사업 수탁기관(노조 등)과 협력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정례화 교육시간에 대한 소정의 수당 지급(유급 교육시간 확보)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형광조끼 배부 유급 교육 및 형광조끼 배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에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
	킷서비스 노동자 안전 운행 보호 ‘킷서비스기사 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객 혹은 킷서비스 업체 전화 금지’ 전화연 결음을 제작
	사회구성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킷서비스 업계와 노동조합 재해예방협의회의 구성
택배기사	산업안전보건교육(시범) 전문강사의 양성 및 파견이 필요함 교육교재 개발이 필요함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인정(수당지급) 조치가 필요함
	복지·위생시설 설치 지원 사업 분류작업 후 사용할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시설의 설치 지원이 필요함 휴게시설 설치 사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는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

구분		주요 내용
대리운전기사	쉽터를 통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지급	쉽터사업 수탁기관(노조 등)과 협력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정례화 교육시간에 대한 소정의 수당 지급(유급 교육시간 확보)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형광조끼 배부 유급 교육 및 형광조끼 배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방안도 가능함
	시범 특수건강진단 사업	대리기사는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직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¹²⁾ 특수건강진단은 배치후 첫 6개월 이내, 그후 12개월마다 시행(시행규칙 별표23) 시범사업의 비용을 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 업체 등이 부담
건설기계 종사자	건설기계분야 산업안전 보건교육 지원 시범사업	직종별 전문강사의 양성 및 파견이 필요함 직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교재 개발이 필요함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인정(수당지급) 조치가 필요함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지원	덤프 및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장비의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부저 설치에 대한 지원

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

참고문헌

- 강성태(2007),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제7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고용노동부(2020),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 김명희 외(2014),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 김용하·강동욱·석재은(2016), 「건설기계 종사자 노무제공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김인재(20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학」(제31권), 한국노동법학회.
- 김천곤(2016),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와 과제”, 「산업경제」(2016.12), 산업연구원.
- 박성희 외(2020),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토교통부.
- 박은정 외(2015),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속성 기준 마련 연구」, 고용노동부.
- 박지순 외(20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이상한(1994), “레미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주택연구」(제2권 제1호), pp. 125~164.
- 이철·김주환·이영수(2015),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 한국소비자원(2019),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